

2026년 텁스(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

『2026년 텁스(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월 26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* TIPS :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

- 민간 투자사*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창업의 활성화 도모

*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, 투자,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, 초기전문VC, 벤처·중소기업 및 대·중견기업 등

□ 텁스 세부사업별 현황

| 팁스(TIPS) 세부사업명 | | 지원 대상 | 지원규모 | 지원 기간 | 지원 한도 | 기업부담 | 신청 접수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R&D | 일반트랙 |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(예비)창업기업 | 총 1,624억원 (신규) | 24 개월 | 최대 8억원 | 총 연구비의 25% 이상 | 1·2·3 분기 |
| | 딥테크트랙 |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'완료' 판정을 받은 '12대 신산업분야' 창업기업 | | 36 개월 | 최대 15억원 | | |
| 비 R&D | 연계 사업 | 창업 사업화 | 총 650억원 (신규) | 각 10 개월 | 최대 1.5억원 (합계 최대 3억원) | 총 사업비의 30%이상 | 1분기 |
| | | 해외 마케팅 | | | | | |

※ 자세한 내용(신청 자격, 접수 일정 등)은 아래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

※ 향후 신청 접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

2. 주요 변경 사항

| 구 분 | 지원계획 주요 변경 사항 |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| '25년 | '26년 |
| 접수시기 | R&D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시 접수 |
| | 비R&D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분기 접수 (총 1회)</u> |
| 지원규모 | R&D (일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년 5억원 |
| | R&D (글로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2년 8억원</u> <p>* 타 사업(글로벌팁스 R&D)과 통합</p> |
| 평가방법 | R&D (딥테크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성·사업성 별도 총 2회 대면평가 |
| | 비R&D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면평가 |
| 신청자격 | R&D (일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 7년 이내 기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유치 |
| | R&D (딥테크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팁스 수행 능력이 없는 기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유치 3억원 이상 투자한 팁스 운영사의 추천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만 지원 가능 <신 설> |
| 가점 | R&D (공통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신 설> |
| | R&D (일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점 합산 최대 3점까지 인정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|

3. 세부사업별 지원계획

※ 접수, 평가, 선정 등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팀스 홈페이지(www.jointips.or.kr)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

(1) 팀스R&D 일반트랙

□ 사업개요

- 팀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2억원 이상(비수도권 소재 기업 1억원 이상) 투자 후 추천하면, 정부 평가를 거쳐 R&D 자금 최대 8억원 매칭 지원

팀스 운영사란?

- ◇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, 투자,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, 초기전문 벤처캐피탈, 벤처·중소기업 및 대·중견기업 등으로,
 -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·선별하여 투자와 보육, 멘토링하는 기관·기업
- ◇ 팀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
 -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(www.jointips.or.kr, ABOUT TIPS - PARTNERS) 참고

□ 지원 절차

| 구분 | 추진절차 | 시행주체 | 절차내용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영사 추천 | ① 창업기업 추천 | 운영사→ 업무지원기관 | · 투자 후 대상 기업 추천 |
| | ② 신청·접수 | 창업기업→ 전문/업무지원기관 | · 전문/업무지원기관에 과제 신청 * IRIS시스템 접수 |
| | ③ 사전검토 | 전문/업무지원기관 | · 투자계약, 신청자격 검토 |
| | ④ 선정평가 | 전문/업무지원기관 | · 기술성, 사업성 평가 |
| | ⑤ 선정통보 | 중기부/전문기관 | · (승인) 중기부 / (통보) 전문기관 |
| | ⑥ 협약체결 | 창업기업/전문기관 | · 과제 협약체결(시스템) |
| | ⑦ 사업수행 | 운영사/창업기업 | · 기술개발 과제 수행 |

□ 지원 내용

< 2026년 텁스 R&D 일반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>

| 사업기간 | 팁스 운영사 투자금 (인정금액 기준) | 총 연구개발비(A+B)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| | 정부지원 연구개발비(A)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(B) | |
| | | | 현금 | 현물 |
| 최대 2년 | 2억원 이상 (비수도권 기업은 1억원 이상*) | 최대 8억원 | 해당 금액 | 해당 금액 |
| | | 총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 |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(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) | |

※ 운영사는 피투자기업(창업기업)의 지분확보 및 운영사 지분율 30% 이하를 조건으로 2억원 이상 투자 필요

* 단, 창업기업의 본사가 비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에 소재할 경우, 1억원 이상 투자 필요

- (자금 지원) 운영사 투자금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8억원을 매칭 지원하고,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

투자금 세부 요건

◇ (기본요건) 텁스 운영사(컨소시엄)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이상 투자

< 투자 유형별 투자금 인정 기준(추천마감일 기준 3년 이내) >

| 연번 | 투자 유형 | 구분 | 인정 기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| 팁스 운영사의 투자금액 | 수도권 (서울, 경기, 인천) | 2억원 이상 투자 |
| 2 | | 비수도권 (수도권 외) | 추천 창업기업의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|
| 3 | 팁스 운영사 투자금액 합산 | 투자금액의 100% | |
| 4 | 운영사 컨소시엄(협력기관) 투자금액 | 투자금액의 100% | 총 투자 인정금의 50% 이상은 (주관)운영사 투자 필요 (운영사 합산 지분율은 30% 이하로 유지) |
| 5 | 프리팁스 신청 시 인정금액 (비수도권 프리팁스 기업 한정) | 인정금액의 100% | |

◇ (투자조건) 투자금액, 지분율 등 투자 조건은 운영사-창업기업 간 자율 협의

* 단, 텁스 총괄 운영지침의 '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' 준수 필요

** 텁스 선정 이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불가(중단) 및 선정취소

- (기타 지원) 운영사가 보육·멘토링,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
 - 창업기업은 지정 보육공간에 입주해야 하며, 보육·멘토링 등 운영사별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음

□ 지원 대상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,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-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
 - ** '업력'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'법인'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'법인설립등기일', '개인사업자'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'사업자등록증'에 기재된 '개업일'을 기준으로 함
 - ***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[붙임2] 참조
- ※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'창업기업 확인서' 요청 시 제출 필요

팁스R&D 일반트랙 필수요건

- ◇ 팀스 운영사로부터 투자(확약) 후 추천된 (예비)창업기업 (2인 이상 구성 필요)
 - * 기관(대학·연구기관 등)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
 - ** 단,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
- ◇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% 이상* 보유, 운영사 지분율은 30% 이하로 유지**
 - * 창업기업 지분 60%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
 - **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
- ◇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
 - * 단,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(10억원) 이상인 경우,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지원 제외사항

- ① 팀스R&D 사업*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(재참여 불가)
 - * 일반트랙, 딥테크트랙, 글로벌트랙, 스케일업 팀스
- 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([붙임2] 참조)
-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'참여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중인 경우

-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-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- ⑥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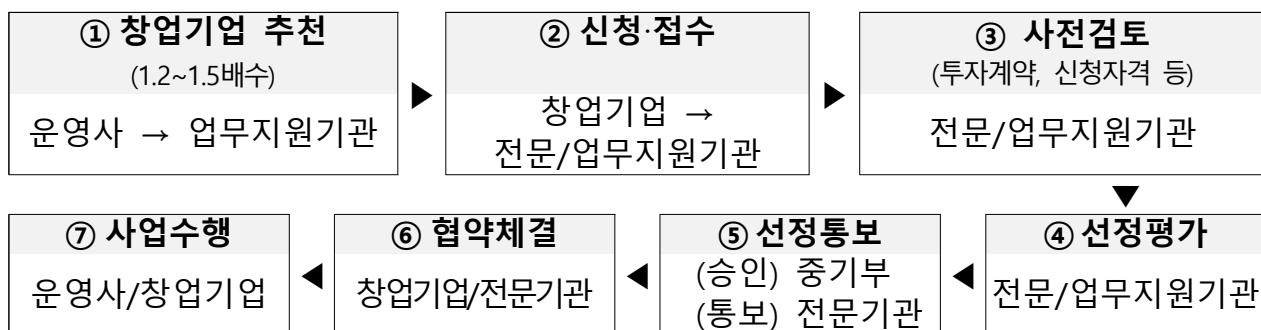
- 1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
- 2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경우
- 3)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

※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3] 및 「팁스 총괄 운영지침」 참조

□ 선정 절차

-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 2026년 팁스R&D 일반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>



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업무지원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**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업무지원기관으로 신청

① 창업기업 추천 (운영사 → 업무지원기관)

- 지원자격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 (운영사별 연간 추천 T/O범위 내)

② 신청.접수 (창업기업 → 전문/업무지원기관)

- (신청 기간) 1·2·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
- (신청 방법) IRIS시스템 접수
- (신청 양식) 공고 붙임파일 참조

※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(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)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,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

-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(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<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>

- 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
 - 이용매뉴얼 : '알림·소식' → '자료실' → 'IRIS 사용 매뉴얼' 참조

③ 사전검토 (전문/업무지원기관)

-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(지분, 의무사항, 채무불이행, 과제의 차별성 등) 및 운영사-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

④ 선정평가 (전문/업무지원기관)

-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, 기술아이템 전문성, 운영사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(시장성)·창업기업(기술성)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

※ 종합평점 = 선정평가(100%) + 가점(최대 5점)

< 팁스(R&D) 일반트랙 가점 >

| 분야 | 우대사항 | 가점 | 확인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|
| 지역균형 (최대5점) | 본사(본점)가 비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에 소재하고,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(확약서 제출) *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, 비수도권 기업이 전체 선정물량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 2점의 가점 부여 | 최대 3점 | 대법원 인터넷기소,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|
| | 공장*이 비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에 소재하고, 협약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(확약서 제출) *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,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| 2점 | |
| 일자리 창출 |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| 1점 |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|
| 연계 사업 우수 성과 | 프리팁스 성과평가 결과 "성공" 판정을 받은 경우 | 2점 | 창업진흥원 |
| 사회적 가치 | 기후테크, 소셜벤처 등 ESG 분야 영위 기업 * ESG 가점 신청 기업은 전체 선정물량의 10% 달성시까지 가점 부여 | 2점 | 전문/업무 지원기관 |
| 기타 |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| 최대 1점 | 벤처기업협회 / 이노비즈협회 |
| |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| 1점 | 고용노동부 등 |

⑤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(중소벤처기업부/전문기관)

-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,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, 지원 금액을 결정
- 창업기업-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최대 8억원)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

⑥ 사업수행 (운영사/창업기업)

- 지정 보육공간(운영사 BI, 텁스타운, 창조경제혁신센터)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·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
-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-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검토
 - * 전문/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 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(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)를 통해 “우수”, “보통”, “미흡”, “극히불량*” 여부 판정
 - * ‘극히불량’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
- 기타 사업 수행, 최종평가(사업화 성공요건 등)에 관한 사항은 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

(2) 팀스R&D 딥테크트랙

□ 사업개요

-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긴 초기 연구개발 기간과 높은 자본 지출을 동반하는 12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기업 지원

* 팀스R&D 일반트랙을 완료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

< 12대 신산업 분야 >

| AI | 반도체 | 양자 · 보안 | 로봇 | 모빌리티 | 생명 · 신약 |
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헬스케어 | 콘텐츠 | 방산 · 우주항공 · 해양 | 친환경 | 에너지 · 핵융합 | 센서 · 공정 |

□ 지원 절차

| 구분 | 추진절차 | 시행주체 | 절차내용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영사 추천 | ① 창업기업 추천 | 운영사→ 업무지원기관 | · 대상 기업 추천 |
| | ② 신청 · 접수 | 창업기업→ 전문기관 | · 전문기관에 과제 신청 *IRIS시스템 접수 |
| | ③ 사전검토 | 전문/업무지원기관 | · 신청자격 검토 |
| R&D | ④ 선정평가 | 전문기관 | · 기술성, 사업성 평가 |
| | ⑤ 선정통보 | 중기부/전문기관 | · (승인) 중기부 / (통보) 전문기관 |
| | ⑥ 협약체결 | 창업기업/전문기관 | · 과제 협약체결(시스템) |
| | ⑦ 사업수행 | 운영사/창업기업 | · 기술개발 과제 수행 |

* 일반트랙 수행 시 투자·추천했던 운영사가 추천 자격을 보유하되, 해당 운영사가 현재 팀스 운영사가 아니거나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, 아래의 운영사도 추천 자격을 보유

- ① 해당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팀스 운영사
- ② 팀스 운영사 자격을 보유한 창조경제혁신센터(붙임1 참조)

□ 지원 내용

< 2026년 텁스 R&D 딥테크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>

| 사업기간 | 투자유치 요건 (인정금액 기준) | 총 연구개발비(A+B)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| | 정부지원 연구개발비(A)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(B) | |
| | | | 현금 | 현물 |
| 최대 3년 | 후속투자 5억원 이상 | 최대 15억원 총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 | 해당금액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(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) | 해당금액 |

- (자금 지원) 텁스(일반 트랙)를 수행하여 '완료'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후속R&D를 통해 3년간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
- (기타 지원) 운영사가 보육·멘토링,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
 - 텁스 지원 창업기업은 지정 보육공간(운영사, BI*, 텁스타운, 창조경제혁신센터)에 입주하여 보육,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
 - * 텁스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(운영사 컨소시엄)이 보유한 보육 공간

□ 지원 대상

- 아래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тин스R&D 딥테크트랙 필수요건

① 일반트랙 수행 후 '완료'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

② 창업기업 '업력'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

* '업력'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'법인'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'법인설립등기일'을 기준으로 함

**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[붙임2] 참고

※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'창업기업 확인서' 요청 시 제출 필요

③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창업기업

* 창업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

** 퇴직연금 신고서,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등 도입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요

④ 후속투자(ting스 운영사가 아닌 투자사의 투자도 인정) 5억원 이상 유치한 창업기업

* 후속투자는 텁스 선정(협약체결)이후 실적만 인정 (투자 건별 합산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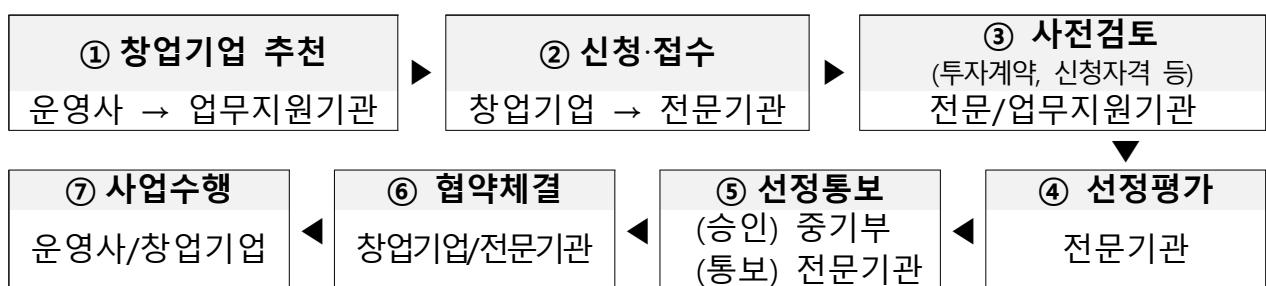
□ 지원 제외사항

- ① 일반트랙을 제외한 텁스R&D*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(재참여 불가)
 - * 딥테크트랙, 글로벌트랙, 스케일업 텁스
- 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([붙임2] 참조)
-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‘참여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중인 경우
-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-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선정 절차

-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 2026년 텁스R&D 딥테크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>



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업무지원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**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전문기관으로 신청

① 창업기업 추천 (운영사 → 업무지원기관)

- 지원자격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

② 신청.접수 (창업기업 → 전문기관)

- (신청 기간) 1·2·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
- (신청 방법) IRIS 시스템 접수

– (신청 양식) 공고 불임파일 참조

※ 창업기업은 복수의 투자사로부터 후속투자(팁스 운영사 여부 무관)를 받을 수 있으나, 팀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팀스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

–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(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<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>

- 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
- 이용매뉴얼 : '알림·소식' → '자료실' → 'IRIS 사용 매뉴얼' 참조

③ 사전검토 (전문/업무지원기관)

–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(의무사항, 채무불이행, 과제의 차별성 등) 등을 검토

④ 선정평가 (전문기관)

–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, 기술아이템 전문성, 운영사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(시장성)·창업기업(기술성)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

※ 종합평점 = 선정평가(100%) + 가점(최대 3점)

< 팀스(R&D) 딥테크트랙 가점 >

| 분야 | 우대사항 | 가점 | 확인 |
|--------|--|----------|--|
| 지역균형 | 본사(본점) 또는 공장*이 비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에 소재하고,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 (확약서 제출) *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,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| 2점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,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|
| 일자리 창출 |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| 1점 |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|
| 기타 |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| 최대 1점 | 벤처기업협회 / 이노비즈협회 |

⑥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(중소벤처기업부/전문기관)

-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,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, 지원 금액을 결정
- 창업기업-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최대 15억원)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

⑦ 사업수행 (운영사/창업기업)

- 지정 보육공간(운영사 BI, 텁스타운, 창조경제혁신센터)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·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
-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은 운영사-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검토
 - *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(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)를 통해 “우수”, “보통”, “미흡”, “극히불량*” 여부 판정
 - * ‘극히불량’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
- 기타 사업 수행, 최종평가(사업화 성공요건 등)에 관한 사항은 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

(4) 텁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)

* 2026년 텁스 R&D 선정기업은 2027년부터 신청 가능[차년도부터 연계 지원]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텁스 R&D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
- (지원대상) 2025년까지 텁스 R&D(일반·딥테크·글로벌 트랙) 사업의 협약을 완료한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
 -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
- (지원내용) 창업사업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 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
- (협약기간)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
- (선정규모) 650개사 내외

□ 지원 내용

- (사업화 자금)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합계 최대 3억원 이내
 - * 사업별(창업사업화/해외마케팅) 각 최대 1.5억원 이내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

< 텁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) 사업비 구성 >

| 협약기간 | 총 사업비(A+B)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정부지원사업비(A) |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(B) | |
| | | 현금 | 현물 |
| 최대 10개월 이내 | 총 사업비의 70% 이하 | 총 사업비의 10% 이상 | 총 사업비의 20% 이하 |
| | | 총 사업비의 30% 이상 | |

*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선정 시,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는 사업별 각각 납부

□ 신청자격

- 2025년까지 텁스 R&D(일반·딥테크·글로벌 트랙) 협약체결을 완료한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
 -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
 - ** '업력'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등기부등본)상의 '회사설립연월일'을 기준으로 함

※ 신청자격 관련 세부 사항은 **[붙임 4]** 참조

☞ 2025년까지 텁스 R&D(일반·딥테크·글로벌 트랙) 협약 완료 기업 중 비R&D 연계 사업에 미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
(2026년 텁스 R&D 선정기업 당해연도 참여 불가, 2027년부터 신청 가능)

<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>

◇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: www.k-startup.go.kr

- 고객센터 → 온라인 매뉴얼 → 창업사업 매뉴얼 → '(창업자)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'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

□ 신청 제외 대상

< 창업사업화 >

- ① 텁스 창업사업화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(기업)(재참여 불가)
-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등
- ③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(기업)에게 지원하는 사업

**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
*** 단, 2026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- ④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 또는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< 해외마케팅 >

- ① 텁스 해외마케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(기업)(재참여 불가)
 -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등
 - ③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글로벌 창업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- *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: 「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 진출 및 현지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- ** 동일년도 2개 이상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*** 단, 2026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④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 또는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선정 절차

- 텁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)의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운영(자세한 선정 절차 및 유의 사항은 [붙임 4] 참조)

< 텁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) 선정평가 절차 >



* (주관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4. 기술료 징수관리

- (납부대상) 최종평가 “완료”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- (납부의무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)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」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
- (기술료 산정)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‘매출액 기여도*’를 적용하여 산출**하며,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%이내

*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&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내 “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” 의미

** 기술료 산식 : 기업의 전체 매출액 × 기술 기여도(R&D제품 예상 매출액/기업 예상 총매출액 × 실사용 정부출연금/총 사업비) × 요율(2.5%)

- (미납기업 제재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참여제한 등) 및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라,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

* 시스템사용 : www.iris.go.kr > 알림소식 > 자료실 > IRIS사용메뉴얼 > 온라인메뉴얼 > “기술료”검색 > R&D업무포털 “사후관리(기술료)메뉴얼” 참고

* 법령확인 : www.iris.go.kr > 알림소식 > 자료실 > 국가R&D법령메뉴얼 > “중소벤처기업부”, “기술료”검색 > “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” 참고

5. 기타 공지사항
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,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

◇ 법(법령)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◇ 행정규칙(훈령, 고시) 등

-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」, 「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」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

◇ 기타 관리지침

- 「팁스(TIPS) 총괄 운영지침」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

- 신청 자격증빙, 투자내역, 가점 신청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·보완제출 불가(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평가·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, 평가·협약 대상에서 제외(또는 협약해약)
-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(투자금, 지분율 등)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·지원,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
 - * 단, 팁스 운영지침 내 "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 방안" 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, 이면계약, 차명·가장납입, 대가성 수수료 지급, 부정한 이익의 요구·약속·취득 등 위법·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이 취소됨(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)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적용
 -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로 채용해야 하며, 협약서류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하여야함

- * 예시) 1.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.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영리기관 A가 7억원,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,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
- ** 「청년고용 친화형 R&D 패키지」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

-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(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),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%를 유지
- *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. 단,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%씩 동시 참가는 가능
- **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%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
 - (신규채용 시점)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 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참여연구원(정규직)
 - * 신규 채용 시점 기준이며,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

○ (3책5공 제도)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

-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,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
 - * (3책5공 제도)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)
 - ** 다만,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

<참고>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

| 구분 | 책임자 | 책임자 외 연구자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주관연구기관 | 연구책임자 | 참여연구자 |
| 공동연구기관 | 참여연구자 | |

※ 위탁연구기관은 제외

6. 문의처

| 구 분 | | 담당 기관 | 전화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일반 트랙 | 업무 지원기관 |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| 02-3440-7421 |
| | |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| 02-3017-7026,7029 |
| 딥테크트랙 | 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팁스실 | (국번없이) 1357 |
| 연계사업 (창업사업화/ 해외마케팅) | 사업화 전문기관 |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| (국번없이) 1357 |
| | 주관기관 |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| 02-3440-7421 |
| 사업총괄(정책문의) | |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| (국번없이) 1357 |
| 시스템·전산 문의 |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| (국번없이) 1877-2041 |
| | |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| (국번없이) 1661-5855 |
| 투자 및 팁스추천 문의 | | 팁스 운영사 | [붙임1] 참조 |
| 홈페이지 | | (팁스) www.jointips.or.kr (연계지원사업) www.k-startup.go.kr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 www.iris.go.kr (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) www.rcms.go.kr | |

※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,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.
각 트랙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, 절차 등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기관으로 문의

[붙임1] 팁스 운영사 현황

[붙임2]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

[붙임3] 팁스 신청방법,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

[붙임4] 팁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) 관련 안내